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8. 23 선고 2021가단1579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3. D

4. E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8. 23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들은 연대하여 101,974,221원 및 그 중 37,749,835원에 대하여 2019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주식회사 B, C은 연대하여 35,281,534원 및 그 중 32,000,000원에 대하여 2011. 1.

1.부터 2011. 7. 15.까지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2019.

5. 31.까지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김진영

별지